

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

|       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1. 신청인 | ① 성 명 | ② 주민등록번호 |
|        | ③ 주 소 |          |

2. 감면 요건

| 적용 요건          | 여 | 부 |
|----------------|---|---|
| ④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|   |   |
|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|   |   |

3. 감면대상 성과급

|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|-------|
| ⑥ 지급확정일   | 년 월 일 |
| ⑦ 지 급 금 액 | 원     |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원천징수의무자 귀하

유의사항

- 1. 공제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.
- 2. 감면을 신청한 경우 수령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지급확정일은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을 말하며, 계량적 · 비계량적 요소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을 말합니다.
- 4. "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"이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)와 그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,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